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064
- 제 출 자 : 김인호 의원(찬성자 10명)
- 제 출 일 : 2016년 3월 9일
- 회 부 일 : 2016년 3월 11일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금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고의 선정과정은 일반경쟁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의 금고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금융기관이 금고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입금 수납 처리과정의 업무차질을 예방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간 금고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자치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금고에서 자치구 세입금 수납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금고의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함(안 제5조).

나. 시장은 자치구가 자치구 세입금에 대한 수납업무의 대행을 요청할 경우, 금고가 해당 자치구 세입금 수납대행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6항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 의견

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기준과 논의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지방재정법」 제77조1)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2),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위임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관계법령에서 금고지정을 강행규정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인 공금의 중요성과 안정성을 강조하고, 공금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금고(금융기관)와의 협력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지방재정법」 제77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의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사·도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사·군 및 자치구의 경우 사·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금고의 약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금융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이 정하는 금고로서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치단체가 금고를 운영함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 재정상태 등이 각각 상이한 바, 금고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금고의 기간 및 관리 등 전반적인 금고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존재하고 있어 금고제도의 본래 기능인 자치단체의 자금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약정기간(안 제5조)

- 안 제5조는 시금고의 약정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것인 바,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시금고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현행 | 개정안 |
|---|---|
|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u>4년</u> 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u>3년</u> 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

- 금고의 약정기간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이미 각각 달리 (3년, 4년 등) 시행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광역자치단체별 금고약정기간 현황 〉

| 구분 | 특별·광역시(1금고) | 도·지자체(1금고) | 비고 |
|----|--|---|--------------------|
| 3년 | 울산(경남) | 충북(농협), 경북(농협), 경남(농협), 전남(농협), 제주(농협), | 특별시·광역시(1) 도(5) |
| 4년 | 서울(우리), 세종(농협), 부산(부산), 대구(대구), 인천(신한), 광주(광주), 대전(하나) | 경기(농협), 충남(농협), 전북(농협), 강원(농협), | 특별시·광역시(7) 도(4) |

※ 참고로 다른 시도는 행정자치부가 개발한 WETAX시스템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금고 전환의 경우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별도의 이양절차가 필요 없으나, 서울시의 경우에는 자체 개발한 ETAX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별도의 이양(인력 및 시스템 운영 노하우)이 필요한 것임.

○ 다만, 금고의 약정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것은 단기간의 금융기관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인프라 구축, 전산망 설치, 금고선정, 이행점검 등 행·재정적인 낭비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신중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2년 제241회 임시회(2012.8.23)에서 신원철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금고의 약정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발의되었으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4년으로 수정 의결한 바 있었음.

※ 집행부(재무국, '16.3.11)는 안정적인 시금고 운영과 전산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약정기간을 4년으로 유지하는 의견을 피력함.

○ 좀 더 세부적으로 현행(4년)과 개정안(3년)의 존속과 개정에 따른 제반문제점을 검토해 보면,

첫째, 현행(4년)에서 개정안(3년)으로 시금고가 변경되었을 경우,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투자되는 고정비용 부담과 시금고 주체인 금융기관의 교체로 인해 실무적인 수납시스템의 불가피한 변동이 초래될 수 있는바, 이로 인한 안정화 기간(약 1년) 소요에 따른 안정적인 금고운영 대비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둘째, 현행 조례에 따라 4년의 약정기간을 적용하게 되면, 시금고 계약체결 연도가 2018년, 2022년, 2026년으로서 지방선거와 겹치게 되고, 개정 조례안에 따른 3년의 약정기간을 적용하면 시금고

계약체결 연도가 2020년, 2023년, 2026년으로서 지방선거와 중첩되지 않아 영향을 받지 않고 시금고를 선정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금고의 선정을 위한 심사가 위원회 구성을 통해 일정기간(약 1일간) 내에 심사를 해 오고 있는 바, 금고의 약정기간 변경(4년→3년)이 금고의 선정에 외부적(정치환경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현행 약정기간(4년)을 변경하지 않고 계약시기를 변경하는 안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 1안) 계약만료 년도인 2018년에 계약기간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하여 선거와 일치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정하는 안
- 2안) 계약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되 선거와 일치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여 조정하는 안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음.

다. 자치구의 수납업무 대행(안 제15조 제6항 신설)

- 본 개정조례안 제15조제6항은 자치구의 요청에 의해서 자치구 세입금 수납업무 대행처리를 시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구 금고 수납 시스템의 미구축·미연계로 인한 세입수납 차질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5조(금고의 약정) ① ~ ⑤ 생략 | 제15조(금고의 약정) ① ~ ⑤ 생략 |
| <신 설> | ⑥ 시장은 자치구가 자치구 세입금 수납 업무의 대행을 요청할 경우, 금고가 해당 자치구 세입금 수납대행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 다만, 본 조례안 중 법령상 위임근거 없이 자치구의 세입금 수납업무를 시장이 대행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1조의 조례제정권과 그 대상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관사무)”에 속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는 바, 조례입법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추가 논의(법적 해석)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집행부는 법령상 위임근거 없이 구청장의 금고지정권한의 일부를 서울시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조례의 제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음.

※ 2016.4월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각각의 법령을 가지고 있음.

○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는 시·구 금고간 비용부담에 대한 문제는 사인간의 계약의 문제이고, 수수료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또한, 자치구 금고 지정은 각 자치구와 금고은행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하고 있는바, 각 자치구의 세입금 수납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의 부담을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보완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
|-------|-----|
| 전문위원 | 김태한 |
| 입법조사관 | 김정덕 |